

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8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1년 7월 19일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

위원장 류한철

1. 수정이유

농업인 대상 시상부문을 쌀 증산 등 5개 부문을 선정하려는 것을 시상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고 향후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을 감안 식량증산 등 3개 부문으로 조정하여 시상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시상부문을 ①쌀 증산 ②과수·화훼 ③채소·특작 ④과학영농(수출농업, 가공·환경농업, 신기술농업 등) ⑤축산·수산·임업 등 5개 부문을 ①식량증산 ②과수·화훼·채소·특작·과학영농(수출농업, 가공·환경농업, 신기술농업 등) ③축산·수산·임업 등 3개 부문으로 조정함.(수정안 제3조 제1항)

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1. 식량증산부문
2. 과수·화훼·채소·특작·과학영농(수출농업, 가공·환경농업, 신기술농업 등)부문
3. 축산, 수산, 임업부문

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시상부문과 인원) ①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<u>쌀증산부문</u> 2. <u>과수·화훼부문</u> 3. <u>채소·특작부문</u> 4. <u>과학영농부문(수출농업, 가공·환경농업, 신기술농업 등)</u> 5. <u>축산, 수산, 임업부문</u> ②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인 또는 1단체로 한다.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.	제3조(시상부문과 인원) ①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<u>식량증산부문</u> 2. <u>과수·화훼·채소·특작·과학영농(수출농업, 가공·환경농업, 신기술농업 등)부문</u> 3. <u>축산, 수산, 임업부문</u> ②·③ (제정안과 같음)